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①

해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 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문 2.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 ③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문 3.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매할 수 있다.
- ②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③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 ④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문 4.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②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용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정답> ③

해설> 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함)같은 세 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문 6.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②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정답> ③

해설>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7.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공제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한다)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개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특별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성실사업자 등의 경우에도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이월결손금은 세법상 공제 가능하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며,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ㄱ. 사업자(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하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포함)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ㄴ.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 ㄷ.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ㄹ.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ㄴ.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ㄹ.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문 9. 양도담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국세의 법정기일 후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세기본법」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령상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양도담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10.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②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국세기본법」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 ④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1.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 본다.

문 12.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와 교부청구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① 「국세조세조정법」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② 경매가 시작된 때
- ③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④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정답> ②

해설>

납기전 징수사유	교부청구 사유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⑤ 경매가 시작된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⑥ 법인이 해산한 때	⑤ 경매가 시작된 때
⑦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법인이 해산한 때
⑧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문 13. 소득세법령상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②

해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문 14. 「법인세법」상 이익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 ④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 포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1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 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ㄷ.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ㄹ.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중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① ㄴ
- ② ㄹ
- ③ ㄱ, ㄷ
- ④ ㄴ, ㄹ

정답> ①

해설> ㄱ.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다.

- ㄷ.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ㄹ.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중간예납의 무가 **없다**.

